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373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이상환(기소), 주해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상욱(국선)
판 결 선 고 2026. 9.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해주고, 근로 장소까지 이동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19세), 피해자 C(여, 20세)는 नेपाल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피고인이 제공한 숙소인 상주시 D건물, E번방에서 거주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2025.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5. 1. 20.경 위 숙소에서, 피해자 B로부터 '컨디션이 좋지 않아 내일부터 일을 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해자를 찾아간 다음, '오늘은 일을 하고 내일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오른 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감싸 안아 피해자의 머리가 피고인의 배에 닿게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들에 대한 2025. 2. 17. 오전경 범행

피고인은 위 숙소에서, 누워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C의 양쪽 볼과 턱 등 얼굴 부위를 만지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B의 양쪽 볼과 턱 등 얼굴 전체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들에 대한 2025. 2. 17. 오후경 범행

피고인은 위 숙소에서, 피해자 B의 머리를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당기고 피해자 B가 이를 피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들 사이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만지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 C의 어깨를 감싸안고, 얼굴과 머리, 등 부위를 쓰다듬고, 옆구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및 피해자들이 범죄에 취약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중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벌금형을 선고하므로 누범가중은 하지 아니함), 피해자들로부터 각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각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상혁 _____